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김승원 · 한병도 · 민병덕

임호선 · 이학영 · 강준현

김종민 · 최혁진 · 박범계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 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

조의2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참가자가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정정 · 취소하여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거래참가자에게 호가 제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7조의2(대량호가의 접수제한 및 부과금) ① 거래소는 회원이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정정 · 취소하여 안정적인 거래소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호가 제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기준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 ⑦ (생 략)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 참가자가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정정·취소하여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거래참가자에게 호가 제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⑧ (생 략)	<u>⑨ (현행 제8항과 같음)</u>
<u><신 설></u>	<u>제397조의2(대량호가의 접수제한 및 부과금) ① 거래소는 회원이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정정·취소하여 안정적인 거래소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에게 호가 제출에 대한</u>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기

준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